

세계의무에 관한 세계선언

(1997년 세계전직국가수반회의 제안)

전문

인간가족 모든 구성원들의 고유한 존엄성과 그들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인간 고유의 권리에는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다.

권리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 그리고 끝없는 분쟁을 낳게 될 것이며, 한편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케 할 것이다.

법의 지배와 인권의 향상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의롭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지구적 문제들을 전세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들과 문화권들이 다 함께 존중할 수 있는 이상과 가치, 그리고 공통적 규범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법이나 제도적 장치, 또는 협약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목표는 모든 민족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더 나은 사회 질서를 정착시키려고 성심 성의껏 노력함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진보와 발전을 위한 인류의 소망은 오로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제도에나 적용할 수 있는 합의된 가치 기준에 의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든 민족과 국가들이 지켜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서 「인간 의무에 관한 세계 선언문」을 선포하는 바이다. 모든 사회의 모든 개인 및 조직체들이 항상 마음 속에 이 「인간 의무에 관한 선언문」을 간직함으로써 그들의 구성원들을 계몽하고, 생활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공헌하여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이미 「인간 의무 선언」에서 천명된 결의를 더욱 굳게 새로이 다짐하여야 한다. 즉, 인간 상호간의 박애 정신을 드높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한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마음 속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감을 모두에게 가르치고, 전세계를 통하여 선양하여야만 한다.

인간성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

제 1 조

모든 사람은 상대방의 성이나 종족,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성향, 언어, 연령, 국적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하여 할 의무를 지닌다.

제 2 조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비인간적 행위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지지하거나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상대방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어떠한 사람이든, 집단, 조직체, 또는 어느 나라 군대나 경찰도 선(Good)과 악(Evil)을 초월하여 군림할 수는 없다. 즉, 모두들 윤리적 기준(Ethical standards)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누구나 매사에 「선」을 권장하고 「악」을 배척하여야만 한다.

제 4 조

양심과 이성을 갖춘 모든 사람들은, 가족과 사회, 종족과 국가, 그리고 종교단체에 대하여 박애의 정신으로 책무를 져야만 한다. 즉,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은, 결코 남에게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폭력과 생명존중

제 5 조

모든 사람은 생명존중의 의무를 진다. 누구도 남을 해치거나, 고문하고 살해할 권리나 의무는 없다. 비록 정당화된 개인, 또는 사회의 자위행위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제 6 조

국가, 집단, 개인들간의 분쟁들은 폭력 없이 해결하여야만 한다. 어느 정부라 할지라도 살인과 테러 행위에 참여하거나, 용인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여자와 어린이들 및 기타 민간인들을 전쟁의 도구로 남용할 수 없다. 모든 시민들과 공직자들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모든 사람은 무한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현존하는 주민들과 또한 미래의 후손들을 위하여, 지구의 토양과 물, 그리고 공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의와 박애

제 8 조

모든 사람은 바르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의무를 지닌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남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훔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

제 9 조

필요한 생활수단을 갖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빈곤과 영양실조, 그리고 무지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모든 이들의 존엄성, 자유, 안전, 그리고 정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지구환경의 파괴를 피할 수 있는 개발방법을 모색하여야만 한다.

제 10 조

모든 이들은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 즉, 그들에게 교육을 받고, 실질적인 일터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은 빈곤에 처하여 있는 사람, 불우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 차별에 의한 희생자들을 도와 주어야만 한다.

제 11 조

모든 재산과 「부」(Wealth)는 인류의 발전과 정의실현에 맞도록 책임 있게 사용하여야만 한다. 경제력과 정치력은 남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여서는 안 되며, 오로지 경제적 정의와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진실성과 관용

제 12 조

모든 사람은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할 의무가 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거나, 막강한 자리에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사생활의 권리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직업에 따른 기밀유지의 권리는 존중하여야만 한다. 사람들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여야만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 13 조

정치인, 공무원, 재계지도층, 과학자, 작가나 예술가 등 그 누구도 일반적인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환자와 의뢰인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는 의사, 법조인, 기타 전문직 종사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모든 윤리규범은 진실성과 공정성과 같은 일반적 기준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만 한다.

제 14 조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하여서는 언론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정부나 사회기관들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언론기관의 자유도 분별력과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행사하여야만 한다. 언론매체의 자유는 정확하고 진실된 보도만을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을 실추시킬 충동적 보도는 절대로 삼가야만 된다.

제 15 조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각 종교지도자들에게는 자신들과 신앙을 달리하는 이들을 차별화하는 행동이나,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진 표현들을 절대 삼가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그들은 증오와 광신주의를 충동하거나, 종교전쟁을 정당화하려고 하여서는 안 되며,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관용할 수 있도록 주도해 나아가야만 한다.

상호존중과 동반자역

제 16 조

모든 남녀들은 서로간에 존경심을 보이고, 모두가 동반자라는 인식을 내면화시킬 의무를 지고 있다. 누구도 타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굴복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성적 동반자들은 서로 행복을 위하여 돌보아 주어야 할 의무감을 느껴야만 한다.

제 17 조

모든 문화적이거나 종교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용서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결혼은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만 한다.

제 18 조

합리적인 가족 계획은 모든 부부의 책임이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상호 사랑, 존경, 애정 및 관심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어른 어느 누구도 자녀를 착취하거나, 욕하거나 학대하여서는 안 된다.

맺는말

제 19 조

이 선언문은 결코, 어느 국가나 집단,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이나, 본 의무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무, 권리, 그리고 자유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나, 또는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